

# 수출입 정보

2019.05



##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입안계획서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02. 수출입물류 동향

- 미국 무역법 301조 관련, 중국산제품 보복관세 부과제외 관련 안내
- 일본産 수산물 수입 금지 '공식 천명'

## 03. FTA 동향

- 한-미 FTA 개정 조기 타결 "美 우려 해소" 평가
- 스텝 트인 對인니 수출, 직접운송 검증 요청 "확 줄었다"

## 04. 최신 품목분류

- 차량용 냉온장고는 어디로 분류해야 하는가?
- 한류 열풍에 합류한 호미

#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입안계획서”

<관세청 훈령 제1881호, 2017. 10. 17>

### □ 개정사유

- 「관세법」에 따른 비특혜 수출물품 및 일반특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절차·방법 규정 신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조사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 □ 주요 개정내용

- 훈령의 제명 개칭 및 모법 추가(제명, §1)  
신설된 관세법상 원산지조사 관련 사항도 아우르도록 훈령 제명을「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으로 개칭·모법에 관세법 추가
- 조사 중지·재개 규정 마련(§15의2)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 중지 가능하되, 중지사유 소멸 즉시 조사 재개토록 규정 마련
- 불복절차 안내문 송부 규정 및 서식 신설(§74, 별지 제53호서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복절차 안내문 송부 규정 신설(§74) 및 불복절차 안내문 서식 마련(별지 제53호서식)
- 관세법에 따른 수출물품 원산지조사 규정 신설(§84~§94)  
**관세법에 따른 비특혜·일반특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절차·방법 규정 신설**
- 관세법에 따른 수입물품 원산지조사 규정 신설(§95~§106)  
**관세법에 따른 일반특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절차·방법 규정 신설**
- 기타 미비사항 정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체계에 적합하게 자구 수정

# 01.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관세청고시 제2019-14호, 2019.4.22.>

### □ 개정 사유

- 수출물품에 대한 “품목번호 6단위 회신 제도”를 신설하고 처리기한을 단축(30일 → 15일)하여 수출업체의 편의 제공
- 품목분류 미확정건 공표에 따른 수출입업체의 불필요한 혼란방지를 위해 결정사례 공개 시기 개선
- 재심사 처리기간을 현실화 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품목분류 재심사 처리 기간’ 변경 등 관련 규정 마련(관세법(‘19.1.1) 및 시행령 개정(‘19.2.12.) 사항 반영)

### □ 주요 개정 내용

- 신속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체계 도입(제8조, 제9조, 제10조)  
(배경) FTA 확대 등 사전심사 신청 급증으로 품목분류 결정이 장기간 소요되어 사후추징 위험 등 불확실성 및 기업부담 가중  
(내용)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목적 등의 수출물품은 6단위 소호 확인만으로 충분하므로, 10단위 결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6단위 소호 회신 제도 신설**  
- 6단위 소호 회신 물품은 **품목분류 처리기간을 단축(30일 → 15일)**하는 등 수출물품 사전심사 신속화로 수출경쟁력 강화
- 수출입업체 품목분류 신뢰보호 방안 마련(제10조, 별지 제2호 서식)  
(배경) 품목분류 재심사중인 결정사례가 공표되어, 미확정 품목분류(저세율)를 신뢰한 업체가 재심사 결과 변경된 품목분류(고세율)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사후추징 피해 가 등  
(내용) **재심사 신청기한(사전심사 통지후 30일)이 지난 후 품목분류가 확정된 결정사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업체 피해 방지  
- 공표되지 않은 품목분류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자가 이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더라도 품목분류 적용이 인정되지 않음(신뢰보호대상 아님)을 유의사항으로 안내(별지2호서식)
- 재심사 처리기간 현실화(8조, 별지 제3호 서식)  
사전심사(재심사) 처리기간이 30일로 동일하였으나, **재심사 처리기간은 60일로 변경**하여 재심사 처리기간 현실화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사전심사(재심사) 반려 규정 추가 및 수정(제5조)  
기타 품목분류를 심사하기에 부적합하여 신청서 반려가 필요한 경우 반려 가능 규정 신설 및 분석수수료 근거 규정 오류 수정
- 기타 개정사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회신문 개정(별지서식 개정)  
- “6단위 소호 확인” 체크란 신설, 수출입 신고이력 및 신고세번 기재 등

## 02. 수출입물류 동향

### “미국 무역법 301조 관련, 중국산제품 보복관세 부과제외 관련 안내”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무역법 301조\*) 조치(이하 보복관세)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구분	1차	2차	3차
품목수	818개 (IT.기계 등 84~90류)	279개 (설비.장치 등 27~90류)	5,745개 (농축산물 등:02~97류)
관세율	25%	25%	10% ~ 25%
발효일	'18.7.6	'18.8.23	'18.9.24

\* 미국 교역상대국의 부당한·비합리적·차별적인 법·제도·관행에 대한 조사와 보복 가능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제1차 및 제2차 보복관세 대상품목 중 1차\* 및 2차\*\*에 걸쳐 보복관세 제외대상품목을 발표하였습니다.

\* 롤러머신, 정수필터 및 컨베이어벨트 등 HS8단위 기준 31개 품목('18.12.28. 발표)

\*\* 펌프, 정수기, 전기모터 및 변압기 등 HS8단위 기준 33개 품목('19.3.25. 발표)

보복관세 제외조치는 보복관세가 최초 부과된 시점까지 소급 적용되며, 보복관세를 납부한 수입자는 세관의 수입세액 정산 이전에는 수정신고하고 정산 이후에는 이의신청을 하여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복관세 부과제외 대상품목, 납부한 세액의 환급절차 등을 확인 하시려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관련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복관세 부과제외 대상품목은 붙임 '미국의 중국산제품 보복관세 부과제외 품목 리스트'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관련사이트】

① 1차 제외대상품목 확인 :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18-12-28/pdf/2018-28277.pdf>

② 2차 제외대상품목 확인 :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19-03-25/pdf/2019-05588.pdf>

## 02. 수출입물류 동향

“일본産 수산물 수입 금지 ‘공식 천명’”

“日과의 수산물 수입 분쟁, 한국의 막판 역전승으로 막 내려”

후쿠시마産 수산물 수입규제를 놓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벌인 분쟁에서 WTO가 우리 손을 들어주면서 8년간 이어진 공방이 막을 내렸다. 이에 탄력을 얻은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다고 공식 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産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승소로 결론난 상소 판정보고서를 전 회원국에 회람·공개했다고 4월 12일 전했다.

이번 WTO 판정은 한 편의 드라마였다는 평가다. 1심에서 일본 측에 유리한 판정을 내린데다 2심에서 뒤집은 전례가 없어 우리의 패배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막판 역전승을 끌어냄으로써 우리 정부의 조치가 정당함을 인정받은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일본産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조치를 실시하고, 2013년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에 따른 임시 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우리 측 조치 중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 금지와 17개의 핵종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지난해 WTO 패널(1심)에서 일본이 제기한 4개 쟁점 중 차별성, 무역제한성, 투명성은 불합치로, 검사절차는 합치로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를 제기했고, WTO 상소기구(최종심)는 일본이 제기한 4개 쟁점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 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해왔다고 밝혔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對일 수입 규제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을 금지하며, 모든 일본産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정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03. FTA 동향

## “한·미 FTA 개정 조기 타결 “美 우려 해소” 평가”

### “USTR, 국별무역장벽보고서 발표 ... 美 관리무역주의 기조 대응 모색해야”

美 정부가 올 1월 개정·발효한 한·미 FTA에서 양국 간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광범위한 개선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KOTRA 워싱턴무역관은 美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가 3월 30일 공개한 ‘국별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에서 이같이 평가했으며, ‘원산지 검증 작업반 구성’ 등 이번 개정 협상에서 한·미 FTA 이행을 강화하는 장치를 마련한 점을 지지할 만한 진전사항으로 평가했다고 4월 11일 소개했다.

워싱턴무역관은 美 정부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언급한 ▲한·미 FTA 이행 미흡, ▲서비스 및 농산물 수출 정체, ▲기타 비관세 장벽 등 이슈를 이번 개정 협상 완료로 상당 부분 해소한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보고서는 예년보다 ‘관세(Tariff)’를 중요한 무역장벽 중 하나로 주목하며, 국가별 분석에서 해당국이 부과하는 관세 제도를 세밀하게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철강 제232조 관세에 캐나다, 중국, EU, 인도 등이 부과 중인 보복관세를 위법(illegitimate)하다고 규정한 점도 눈에 띄다고 분석했다.

KOTRA는 이번 보고서가 미국의 혁신과 성장의 필수조건인 디지털교역(Digital Trade)과 관련해 국경간 정보 이전(Cross Border Transfer of Data) 제약, 데이터 현지화(Data Localization) 요건에 대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와는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서 지난해 지적사항 중 일부를 삭제해 FTA 개정 협상, 분야별 양자 협의 등 여러 채널로 양국 간 현안을 상당 부분 개선한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의 ‘정보통신 장비에 대한 사이버보안 규정’ 및 ‘주류제품에 대한 경고문구 의무 표시제’ 관련 문제 제기는 올해 보고서에서 빠졌다. 다만 ‘원예 제품 수입의 위생검역 절차 지연’ 이슈를 제기하며, 위생검역조치와 관련한 시장 접근성(Market Access) 확대 개선을 추가 요구한 상황이다.

한편 USTR은 ‘2019년 무역정책 아젠더’에서 지속적이고 강력한 관리무역 기조를 고수해 미국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하겠다는 것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미 체결한 무역협정 이행 집행 강화, 반덤핑·상계관세 행정부 조사 발동 등 국내 법적 조치와 WTO를 통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KOTRA는 ‘국별무역장벽보고서’에서 제시한 내용 중 미국 기업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美정부가 「통상무역법」에 따라 제301조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기업은 해당 보고서에 내용을 토대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규제를 정비하는 등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03. FTA 동향

“숨통 트인 對인니 수출, 직접운송 검증 요청 “확 줄었다””

“관세청, ‘184건’서 ‘7건’으로 크게 감소 ... 증빙서류 확대 합의 결과”

올 들어 인도네시아 관세당국이 우리 수출물품의 직접운송원칙 위반 여부를 의심해 FTA 수출검증을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 2월 한·ASEAN FTA 이행위원회에서 직접운송 증빙서류의 인정 범위 확대에 합의한 이후 수출절차 간소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관세청은 인도네시아정부가 우리 기업에 FTA 수출검증을 요청한 건수가 지난해 1/4분기에 184건에 달했는데, 올해 같은 기간엔 7건으로 크게 줄었다고 4월 16일 밝혔다.

올 2월 합의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 등 ASEAN 국가로 수출하는 물품이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경우 협정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선적지·도착지·경유지가 표시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거나, 직접운송의 보충서류로서 해당 물품이 제3국에서 가공되지 않고 직접운송됐음을 증명하는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합의로 직접운송 증빙서류가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입증되는 모든 서류’로 폭넓게 인정된 덕분에 이와 같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도네시아로 향하는 직항노선이 드물어 대부분 주변국을 경유해 수출이 이뤄지고 있어, 합의 이전까지는 직접운송 증빙서류 제출 등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많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양자·다자 간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FTA 특혜를 원활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 한·ASEAN FTA 협정문(직접운송 관련 규정) 】

1.(직접운송 정의) 해당 물품이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혜관세대우의 요건을 충족한다.①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 또는 운송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②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③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요구되는 공정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2.(직접운송 증빙서류) ① 통과선하증권, ② 원산지증명서, ③ 상업송장 사본, ④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거인 증빙서류**

# 04. 최신 품목분류

## “차량용 냉온장고는 어디로 분류해야 하는가?”



### <물품설명>

- 차량의 시가잭으로 전원을 연결하여 냉장 또는 온장 기능을 수행하는 차량용 냉온장고
- 제품구성 : 본체, 12V 시가잭 어댑터, 어깨끈
- 규격 : 17cm×32cm×25.5cm
- 제품용량 : 6L
- 정격전압 : DC 12V
- 결정세번 : 제8418.69-2090호

○ 관세율표 제8418호에는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냉장고(refrigerators)와 냉장기구(refrigerating equipment)는 액화가스[예: 암모니아(ammonia)·할로젠(halogen)화된 탄화수소]·휘발성 물체·물(특정 선박용의 경우에서)의 기화에 따른 잠열(潛熱 : latent heat)의 흡수에 의하여 저온(섭씨 0°C 전후나 그 이하의 온도)을 연속적인 사이클의 조작으로 적극적으로 냉각기에서 발생시키기 위한 기계나 장치의 조립물이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제8418.6호에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와 열펌프"를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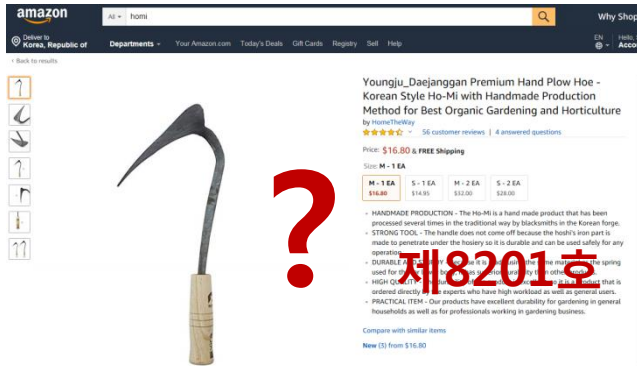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시가잭(또는 가정용 전기코드)으로 전원을 연결하여 냉장 또는 온장 기능을 수행하는 **차량용 냉온장고**로 "그 밖의 냉장기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8418.69-2090호에 분류함**. 끝.



# 04. 최신 품목분류

“한류 열풍에 합류한 호미”

“호미가 관세율표상 분류되는 호는?”



○ 어릴적 추억 속에서나 기억될 호미가 미국 등 외국의 가정에서 목격되고 있다. 최근 외국 정원사들 사이에서 필수 아이템으로 떠오른 호미는 한번 사용해보면 이 기구 없이는 정원을 꾸밀 수 없을 정도로며 극찬을 받고 있다.

○ 호미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닷컴에서 12인치 길이 기준 최소 23달러에서 최대 32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같은 크기의 호미 가격이 3,000~5,000원인 것에 비교하면 5~6배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

호미는 예로부터 논밭의 김을 맬 때 사용하는 우리의 전통 연장이다. 부등변 삼각형인 날의 한쪽 모서리에 목을 이어대고 거기에 자루를 박은 독특한 형태의 연장인 호미는 이미 통일신라시대의 안압지 출토유물에서 확인된 바 있다. 고려시대의 호미도 오늘날의 호미와 거의 동일한 것이다. 호미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농기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호미와 같은 농기구는 관세율표 제8201호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picks)·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울타리 전단기·제재(製材)용 쇠끼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공구”에 분류된다.

○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농업용·원예용이나 임업용에 사용하는 수공구(hand tools)를 분류하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예 : 도로작업·토목공사·광업·석공·목공이나 가정용의 도구)도 이 호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화에 준비된 **Global No.1** 관세전문가집단  
'지금 고객이 원하는 이상의 가치를 창조하여 고객을 최고로'  
지원관세법인이 약속 드립니다.

---



- 수출입 통관
- 관세환급
- 수출입요건 확인



- 통관 및 물류의 ONE-STOP서비스
- 보세창고 운영
- 내륙운송 전국물류망 구축



<http://www.gonecustoms.com>

본사 / T.055-758-4600 F.055-758-4670 부산 / T.051-254-4611 F.051-254-4612

평택 / T.031-683-1155 F.031-683-1158

(주)지원로지스(보세창고,검역) / T.031-682-6112 F.031-686-6111

(주)델타해운항공(물류) / T.031-682-6113 F.031-682-6114